제21대 건축학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able' 징계 재심의 결과 공고

11월 14일 공고한 징계 사실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들어와 재심의를 거쳐 공고합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은 공과대학 온라인 시행 세칙 중 제2절 징계 사항 중 제61조(경고) 7항 '선전물 부분의 위반 시 동일조항일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및 선거 선례 중 제13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선거운동본부의 선례의 내용입니다.

건축학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진행하여 선거본부 'able'의 후보추대위원이 아닌 학우에게 홍보를 맡긴 것에 대하여 선거 진행에 무지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기존 소학회당 1회로, 합계 주의 5회 부과가 아닌,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총 '주의 1회'를 부과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경고 사항인 '주의 1회'를 부과합니다.

본 징계 공고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사과문을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자유게시 판 및 출사표 게시 위치에 기재해야 하며, 게시 후 건축선관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축학과 선거관리위원장 김남혁 010-9159-7365 2022년 11월 15일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선거관리위원회